-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-

주민대표단 구성 시 주택단지별 안배기준

1 기본원칙

- 주민대표단은 5명 이상 25명 이하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 대표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- 주택단지별 안배는 각 주택단지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배하는 것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2 대지면적 산정기준

- 주택단지별 대지면적은 주민대표단 구성동의서 검인 신청일 현재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사업계획승인도서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주택단지의 구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
3 적용 및 경과규정

- 이 기준은 방침 결정일(2026. 9. 8.) 이후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서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다만, 이 기준 시행 전에 최초로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서 검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